◆ 수급자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의무
2. 년 한도액 160만원 범위 내 서비스 이용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4.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◆ 복지용구 구입. 대여료 납부 방법

①현금납부
②계좌이체. 분납 가능.
농협계좌 (356-104649-7273)
예금주 :박 보 선 평안복지용구 사업소

③서비스의 계약해지 시 대여료는 일수 계산 하여 환불 한다.

◆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이용료

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◆ 이용료 비용의 변경

① 복지용품의 비용은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른다.

◆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임 부담율의 변경되었을 경우

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때 수급자의 요건변동이 있는 경우

④ 복지용품의 가격변동이 있는경우

⑤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 경우

2.복지용구 대여제품 계약의 해제

① 대여제품 (전동침대. 수동휠체어) 계약의 해제는 병원 입원.요양원 입소.의 경우는 반드시 대여제품의 계약해제를 평안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한다.

② 이외의 수급자의 건강상태의 변화.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안복지 용구 사업소에 계약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.

③ 본인부담금 대여료는 사용기간까지 일 수 계산하여 수급자에게 반환한다.

④ 전동침대. 수동휠체어 대여제품 사용 중 수급자의 실수로 훼손. 파손되어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품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◆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

1.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게 통보
4.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에게 통보
5.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
6.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◆ 계약의 해제

1.복지용구 구입제품 계약의 해제

① 평안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 구입 후 제품의 불편. 사용의 어려움. 개인적 기타사유로 계약을 해제가능 하다.
단. 부득이한경우를 제외하고 구입당월에 사업소에 연락을 하여 계약 해제를 하도록 한다.
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.
계약 해제 시 제품의 손상. 훼손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변상책임이 있다.

◆기초수급자의 경우
(복지용구 확인서. 노인장기인정서. 표준장기 계획서) 위3장의 서류를 평안복지용구사업소 직원에게 사본을 주어 주민자치센터에 접수 할 수있도록 한다.
대여제품의 경우 재신청할때도 위 서류3장을 평안복지용구 사업소에 제출.

제 8조 (연 한도액)

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
②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(이하 "유효기간" 이라 한다)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
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
제 9조. (월 이용료)
◆ 판매제품의 경우는 구입한 첫 회에 본인 부담률(15%.9%.7.5% 6%.0%)에 따라 지급 한다. 금액이 크면 분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◆대여제품의 경우는 기간 내의 대여료전체를 (15%.9%.7.5% 6%.0%)지급. 또는 분납 하여 납부 할 수 있다. 일시불로 납부 후 수급자의 사망. 건강회복으로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반납 후 일일계산하여 수급자. 보호자에게 돌려준다.

24 5월 24. 12:10a
p.2

제 4조 (급여방식)

복지용구 급여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"복지용구 사업소" 라 한다)에 의하여 제공된다.

제 5조 .(계약목적)
수급자의 건강회복과 불편한 신체를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.
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지용품의 활용을 국가가 지원 해준다.
평안복지용구사업소도 위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지용품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설명. 안내한다.

제 6조. (계약기간)
복지용구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요양기간과 같이 한다.
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100% 본인부담으로 구입. 대여 가능 하다.

제 7조 (계약과정)

◆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수급자. 보호자가 평안복지용구사업소에 수급자의 성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복지용구확인서 서류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노인인정번호를 확인한다.
복지용구확인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 노인인정번호를 알려준다.

◆ 계약의 과정에 보호자 또는 수급자는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필요한 복지용품이 무엇인지 설명해준다.

◆ 평안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수급자의 가정환경과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용품을 추천 . 안내한다.

24 5월 24, 12:10a p.1